

법 률

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17년 10월 13일

국무총리 이 낙 연

국무위원 박 상 기
법무부장관

●**법률 제14901호**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

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「건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건물의 분할, 구분, 합병,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. <법제처 제공>

~~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~~

~~대 통 령 문 재 인 ~~

~~2017년 10월 13일~~

~~국무총리 이 낙 연~~

~~국무위원 김 영 록
농림축산식품부장관~~

~~국무위원 김 영 춘
해양수산부장관~~

●~~법률 제14902호~~

~~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~~

~~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~~